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그린리모델링) 참여기업 모집 공고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분야 IT 관련 업무 경험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연계·실무형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특화분야(그린리모델링 분야)」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1.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그린리모델링 분야)
 -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 ☐ 운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 사업내용 : 그린리모델링 분야 IT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본 공고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하며, 공고문 외 기타 해석에 대한 사항은 지침에 따름

2. 그린리모델링 특화분야 지원 대상

-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호법」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단위로 판단 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 「고용보호법」 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

3. 참여 요건

- ☐ 기업 요건 (※ 소비·향락업, 공공기관 등 지원제외 사항 ‘지침’ 참고)

- 그린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사업자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 에너지컨설팅 업체(에너지평가사 등)
 - 기타 관련 기업(일반 건축사무소, 설비·시공회사 등)
- 채용 청년의 직무는 그린리모델링 분야 IT 관련이어야 함
 - IV유형(기타형) : ① 3D 모델링 업무(스케치업, BIM 등)
② 에너지 시뮬레이션 분석 업무(ECO2 등)
③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IT 업무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아날로그 자료(문서, 기록물)의 CAD화(단순 캐드 설계 업무 불가)
 - I유형(콘텐츠 기획형) : ① 홈페이지 기획·관리
② 유튜브·SNS 콘텐츠 관리 관련 업무
-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신청일 포함)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참여기업 신청서 작성 시 채용 유형은 IV유형(기타형),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I유형(콘텐츠 기획형) 중 선택하여야 함
- * 청년의 주된 업무가 IT 직무인 경우에 한해 다른 비IT 직무(1가지)를 병행가능 (이 경우 기업은 운영기관에 청년의 IT 직무 수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 必)

□ 청년 요건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
 -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다만, 다음 각 호는 취업중인 자로 봄)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 계약직,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근로조건
 - (근로계약)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보험적용)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
 -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은 자
-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자
 -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 제외(예. '21.1.20. 채용 시 '21.9.30.까지만 신청 가능)
- 지원제외 청년
 -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3회까지 허용)
 - * 단, 동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되었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횟수를 가산하지 않음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관련 사업주 등에 고용된 자(참여청년을 동일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참여청년을 관련 사업주가 6개월 이내에 고용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 *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중복참여 불가사업이 아닌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규모사업 저임금노동자 사회보험료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 지원금을 받는 자
 - *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받는 자
 - * 다만, 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 * 다만, 아래 경우는 지원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는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 가능)

4. 지원내용

□ 참여기업

○ 지원기간

- 참여기업이 ①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 ②참여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단,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함)

* 청년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지원한도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연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최대 30명 상한)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
- * 채용 필요성, 직무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

<기업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	별도 승인 시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최대 30명)	최대 2배(최대 60명)

- * (예) 50인 기업 : 기업 지원한도 최대 30명 ⇒ 별도 승인 시 60명
- 10인 기업 : 기업 지원한도 최대 10명 ⇒ 별도 승인 시 20명
- 3인 기업 : 기업 지원한도 최대 3명 ⇒ 별도 승인 시 6명

○ 지원수준

-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참여청년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최대 180만원)를 지급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 추가 지원

<지원금 지급수준>

월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원단위 절사)	10만원

- * 단,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 지원기간 중 기업이 참여 청년에게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그 수급 기간 동안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5. 참여신청 안내

☐ 참여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1년 6월 1일 ~ 12월 31일
 -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 ** '21. 12월 채용자의 경우 '22년도에 이어서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워크넷을 통해 참여 신청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홈페이지 (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운영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지정 후 신청
 - 워크넷 입력 후 참여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붙임1 양식) 업로드

☐ 자격 심사

- 신청기업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자격요건을 심의하며 결격여부, 증빙자료 불충분 등의 사유로 미충족한 기업은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접수서류 확인 및 적격 여부 결정 후 통보

- ☐ 참여기업으로 승인된 기업은 지원 협약체결, 청년 채용 및 통보, 지원금 신청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상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6. 기타 사항

□ 참여기업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기업의 운영실태 점검, 부정수급 조사 등을 위하여 현장점검 실시(반기별 1회 이상)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지도·점검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부정수급 관련 안내

- 참여기업의 사업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
- 부정수급 대표 유형
 - 사업주 확인서, 지원금 지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수행업무 현황, 교육실시 현황 등 지원금 관련 서류 허위 작성
 - 근무 사실이 없는 사업주의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위장 취업
 - 동 사업과 무관하게 기존에 재직하고 있던 근로자를 신규채용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은닉
 - 기타 사회 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한 경우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참여기업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	부과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상담 및 문의

구분	운영기관	연락처	메일주소
수도권	협동조합 에평	02-466-1124	kalis04@kalis.or.kr
그 외 지역	국토안전관리원	055-771-4951 ~ 4	

위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은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참고(www.work.go.kr/youthjob)